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,
도시계획시설:공원) 변경 결정안

-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6개소 -

인 천 광 역 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, 도시계획시설:공원)결정(변경)안

-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6개소 -

의안 번호	87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0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05, 3. 31)으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6조(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) 제1항의 규정에 의거,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코자 하며,
- 아울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자원의 체계화된 공원화 계획을 통하여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의 유형을 변경결정 하고자,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월미 도시자연공원 외 6개소 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, 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변경대상 공원현황

연번	공원명	위 치	면적(m ²)	최초결정일
계			14,529,597.8	
1	월미도시자연공원	중구 북성동 1가 월미산 일원	590,786.2	건고 제2701호 (66.8.31)
2	청량도시자연공원	연수구 옥련동 동춘동, 청학동 일원	880,517.0	건고 제2701호 (66.8.31)
3	인천대도시자연공원	남동구 장수동 운연동 일원	2,983,542.0	건고 제344호 (70.7.20)
4	약사도시자연공원	남동구 간석동 만월산 일원	2,284,657.0	건고 제2701호 (66.8.31)
5	호봉도시자연공원	부평구 산곡동 서구 가좌동 호봉산 일원	847,855.0	건고 제344호 (70.7.20)
6	계양도시자연공원	계양구 계산동 서구 공촌동 일원	5,283,354.0	총독부고시 제3호 (44.1.8)
7	연희도시자연공원	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	1,658,886.6	건고 제344호 (70.7.20)

- 도시관리계획 현황 : 보전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

3. 입안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 [도시자연공원구역, 도시계획시설 : 공원] 변경결정(안) 조서

1) 월미도시자연공원

○ 총괄표

구분	기정		변경후		비고
	개소	면적	개소	면적	
계	1	590,786.2	1	590,614.0	감)172.2
도시자연공원구역	-	-	-	-	
도시자연공원	1	590,069.9	-	-	
생활권 공원	소공원	-	-	-	
	어린이공원	-	-	-	
	근린공원	-	-	1	590,614.0
주제 공원	역사공원	-	-	-	
	문화공원	-	-	-	
	수변공원	-	-	-	
	묘지공원	-	-	-	
	체육공원	-	-	-	
	조례가정하는공원	-	-	-	-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9	월미공원	도시자연공원	중구 북성동1가 월미산 일원	590,786.2	감)716.3	590,069.9	66.8.31 (간고2701)	
폐지	9	월미공원	도시자연공원	중구 북성동1가 월미산 일원	590,069.9	감)590,069.9	-	66.8.31 (간고2701)	
신설	1	월미공원	근린공원	중구 북성동1가 월미산 일원	-	590,614.0	590,614.0	-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9	월미공원	•면적변경(감 716.3㎡) (A = 590,786.2㎡ → A = 590,069.9㎡)	•기 결정된 공원면적과 공부상 면적차이로 인한 면적변경
9	월미공원	•도시자연공원 폐지 (A = 590,069.9㎡)	•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폐지
1	월미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590,614.0㎡)	•토지이용계획상 경계불일치로 도시자연공원이 누락된 부분(A=544.1㎡)을 포함하고, •공원 전체면적의 90%이상이 조성된 공원으로 주변 관광특구와 연결시키는 생활권공원(근린 공원)으로 조성

2) 청량도시자연공원

○ 총괄표

구분		기정		변경후		비고
		개소	면적	개소	면적	
계		1	880,517.0	5	890,242.2	증9,725.2
도시자연공원구역		-	-	1	477,153.2	
도시자연공원		1	880,517.0	-	-	
생활권 공원	소공원	-	-	-	-	
	어린이공원	-	-	1	6,247.0	
	근린공원	-	-	2	68,044.0	
주체 공원	역사공원	-	-	-	-	
	문화공원	-	-	-	-	
	수변공원	-	-	-	-	
	묘지공원	-	-	-	-	
	체육공원	-	-	-	-	
	조례가정하는공원	-	-	1	338,798.0	산림휴양공원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조서 : 도시자연공원구역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정	변 경	변 경 후	
1	청량 도시자연공원구역	연수구 동춘동 산57번지 일원	-	477,153.2	477,153.2	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 치	면적(m ²)	변경사유
신설	1	연수구 동춘동 산57번지 일원	477,153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8	청량공원	도시자연공원	연수구 옥련동, 동춘동, 청학동 일원	880,517.0	9,725.2	890,242.2	66.8.31 (간고2701)	
폐지	8	청량공원	도시자연공원	연수구 옥련동, 동춘동, 청학동 일원	890,242.2	감890,242.2	-	66.8.31 (간고2701)	
신설	1	청량공원	산림휴양공원	연수구 청학동 산55-34번지 일원	-	338,798.0	338,798.0	-	
신설	2	농원공원	근린공원	연수구 동춘동 산9-4번지 일원	-	46,291.0	46,291.0	-	
신설	3	청능공원	근린공원	연수구 청학동, 동춘동 산2번지 일원	-	21,753.0	21,753.0	-	
신설	4	동곡공원	어린이공원	연수구 동춘동 56번지 일원	-	6,247.0	6,247.0	-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8	청량공원	•면적변경(증 9,725.2㎡) (A = 880,517.0㎡ → A = 890,242.2㎡)	•기 결정된 공원면적과 공부상 면적차이로 인한 면적변경
8	청량공원	•도시자연공원 폐지 (A = 890,242.2㎡)	•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폐지
1	청량공원	•산림휴양공원 신설 (A = 338,798.0㎡)	•군부대이전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지역과 추후 산림청에서 숲유치원등의 계획이 있는 산림청소유의 부지를 주재공원(산림휴양공원)으로 결정
2	농원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46,291.0㎡)	•공원시설 우선입지 대상으로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3	청능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21,753.0㎡)	•일부 공원조성 지역으로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 결정
4	동곡공원	•어린이공원 신설 (A = 6,247.0㎡)	•공원시설 우선입지 대상이며, 공원입지 희망도가 높아 생활권공원(어린이공원)으로 결정

3) 인천대도시자연공원

○ 총괄표

구분		기정		변경후		비고
		개소	면적	개소	면적	
계		1	2,983,542.0	2	3,104,759.3	증121,217.3
도시자연공원구역		-	-	1	321,958.4	
도시자연공원		1	2,983,542.0	-	-	
생활권 공원	소공원	-	-	-	-	
	어린이공원	-	-	-	-	
	근린공원	-	-	1	2,782,800.9	
주제 공원	역사공원	-	-	-	-	
	문화공원	-	-	-	-	
	수변공원	-	-	-	-	
	묘지공원	-	-	-	-	
	체육공원	-	-	-	-	
	조례가정하는공원	-	-	-	-	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조서 : 도시자연공원구역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정	변 경	변 경 후	
2	인천대 도시자연공원구역	남동구 운연동 산74-9번지 일원	-	321,958.4	321,958.4	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 치	면적(m ²)	변경사유
신설	2	남동구 운연동 산74-9번지 일원	321,958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6	인천 대공원	도시자연공원	남동구 장수동 운연동 일원	2,983,542.0	2,529.3	2,986,071.3	70.7.20 (간고344)	
폐지	6	인천 대공원	도시자연공원	남동구 장수동 운연동 일원	2,986,071.3	감2,986,071.3	-	70.7.20 (간고344)	
신설	1	인천 대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장수동 산78번지 일원	-	2,782,800.9	2,782,800.9	-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6	인천대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면적변경(증 2,529.3m²) (A = 2,983,542.0m² → A = 2,986,071.3m²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 결정된 공원면적과 공부상 면적차이로 인한 면적변경
6	인천대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도시자연공원 폐지 (A = 2,986,071.3m²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폐지
1	인천대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근린공원 신설 (A=2,782,800.9m²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부지정형화 및 공원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변 일부부지(A=1,351m²) 및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천대공원 편입부지(A=117,337m²)를 포함하고, •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천대공원 편입부지 및 인천대공원 일대의 양호한 수림을 보전하여 인천광역시의 생태녹지축을 강화하고자 공원 시설물의 법적규제가 큰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
4) 약사도시자연공원

○ 총괄표

구분		기정		변경후		비고
		개소	면적	개소	면적	
계		1	2,284,657.0	7	2,371,478.8	증86,821.8
도시자연공원구역		-	-	1	1,823,568.8	
도시자연공원		1	2,284,657.0	-	-	
생활권 공원	소공원	-	-	1	4,144.0	
	어린이공원	-	-	-	-	
	근린공원	-	-	4	135,886.0	
주제 공원	역사공원	-	-	-	-	
	문화공원	-	-	-	-	
	수변공원	-	-	-	-	
	묘지공원	-	-	-	-	
	체육공원	-	-	-	-	
	조례가정하는공원	-	-	1	407,880.0	도시생태공원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조서 : 도시자연공원구역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정	변 경	변 경 후	
3	약사 도시자연공원구역	남동구 만수동 부평구 일신동 일원	-	1,823,568.8	1,823,568.8	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 치	면적(m ²)	변경사유
신설	3	남동구 만수동 부평구 일신동 일원	1,823,568.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5	약사공원	도시자연공원	남동구 간석동 만월산 일원	2,284,657.0	86,821.8	2,371,478.8	66.8.31 (간고2701)	
폐지	5	약사공원	도시자연공원	남동구 간석동 만월산 일원	2,371,478.8	감2,371,478.8	-	66.8.31 (간고2701)	
신설	1	도롱뇽공원	도시생태공원	남동구 만수동 6-2번지 일원	-	407,880.0	407,880.0	-	
신설	2	석촌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간석동 산15-1번지 일원	-	53,577.0	53,577.0	-	
신설	3	비루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만수동 1-427번지 일원	-	41,827.0	41,827.0	-	
신설	4	산땀말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만수동 산1-2번지 일원	-	29,545.0	29,545.0	-	
신설	5	실은재공원	근린공원	남동구 간석동 3-9번지 일원	-	10,937.0	10,937.0	-	
신설	6	새말공원	소공원	남동구 간석동 산36-7번지 일원	-	4,144.0	4,144.0	-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약사공원	•면적변경(증 86,821.8m ²) (A = 2,284,657.0m ² → A = 2,371,478.8m ²)	•기 결정된 공원면적과 공부상 면적차이로 인한 면적변경
5	약사공원	•도시자연공원 폐지 (A = 2,371,478.8m ²)	•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폐지
1	도롱뇽공원	•도시생태공원 신설 (A = 407,880.0m ²)	•공원시설 우선입지 대상지역과 도롱뇽서식지 및 양호한 자연경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주제공원(도시생태공원)으로 결정
2	석촌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53,577.0m ²)	•공원시설 입지가능지역으로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3	비루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41,827.0m ²)	•공원시설 우선입지 대상지이며, 주변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4	산땀말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29,545.0m ²)	•소규모 운동시설 및 경작지로 이루어졌으며, 공원시설 입지가능지역으로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5	실은재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10,937.0m ²)	•무허가 공장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시가화확산을 방지하고, 공원시설 우선입지 대상지역으로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6	새말공원	•소공원 신설 (A = 4,144.0m ²)	•공원시설 입지가능 지역으로 생활권공원(소공원)으로 결정

5) 호봉도시자연공원

○ 총괄표

구분		기정		변경후		비고
		개소	면적	개소	면적	
계		1	847,855.0	4	834,238.6	감)13,616.4
도시자연공원구역		-	-	1	656,427.8	
도시자연공원		1	847,855.0	-	-	
생활권 공원	소공원	-	-	1	1,322.0	
	어린이공원	-	-	-	-	
	근린공원	-	-	2	176,488.8	
주제 공원	역사공원	-	-	-	-	
	문화공원	-	-	-	-	
	수변공원	-	-	-	-	
	묘지공원	-	-	-	-	
	체육공원	-	-	-	-	
	조례가정하는공원	-	-	-	-	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조서 : 도시자연공원구역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정	변 경	변 경 후	
4	호봉 도시자연공원구역	부평구 산곡동 서구 가좌동 일원	-	656,427.8	656,427.8	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 치	면적(m ²)	변경사유
신설	4	부평구 산곡동 서구 가좌동 일원	656,427.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4	호봉공원	도시자연공원	부평구 산곡동 서구 가좌동 호봉산 일원	847,855.0	감)13,616.4	834,238.6	70.7.20 (간고344)	
폐지	4	호봉공원	도시자연공원	부평구 산곡동 서구 가좌동 호봉산 일원	834,238.6	감)834,238.6	-	70.7.20 (간고344)	
신설	1	-	근린공원	부평구 십정동 산2-2번지 일원	-	151,089.0	151,089.0	-	
신설	2	-	근린공원	서구 가좌동 산150-3번지 일원	-	25,399.8	25,399.8	-	
신설	3	-	소공원	부평구 산곡동 산47-25번지 일원	-	1,322.0	1,322.0	-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	호봉공원	•면적변경(감 13,616.4m ²) (A = 847,855.0m ² → A = 834,238.6m ²)	•기 결정된 공원면적과 공부상 면적차이로 인한 면적변경
4	호봉공원	•도시자연공원 폐지 (A = 834,238.6m ²)	•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폐지
1	함봉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151,089.0m ²)	•현 이용현황과 기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생활권 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2	-	•근린공원 신설 (A = 25,399.8m ²)	•공원시설 입지가능지역으로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3	청원새싹공원	•소공원 신설 (A = 1,322.0m ²)	•공원시설 우선입지 대상지로 주변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생활권공원(소공원)으로 결정

6) 계양도시자연공원

○ 총괄표

구분		기정		변경후		비고
		개소	면적	개소	면적	
계		1	5,283,354.0	6	5,523,262.0	증239,908
도시자연공원구역		-	-	1	4,803,801.0	
도시자연공원		1	5,283,354.0	-	-	
생활권 공원	소공원	-	-	-	-	
	어린이공원	-	-	-	-	
	근린공원	-	-	5	719,461.0	
주제 공원	역사공원	-	-	-	-	
	문화공원	-	-	-	-	
	수변공원	-	-	-	-	
	묘지공원	-	-	-	-	
	체육공원	-	-	-	-	
	조례가정하는공원	-	-	-	-	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조서 : 도시자연공원구역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정	변 경	변 경 후	
5	계양 도시자연공원구역	계양구 효성동 서구 공촌동 일원	-	4,803,801.0	4,803,801.0	

○ 용도구역 변경결정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 치	면적(m ²)	변경사유
신설	5	부평구 산곡동 서구 가좌동 일원	4,803,801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계양공원	도시자연공원	계양구 계산동 서구 공촌동 일원	5,283,354.0	239,908	5,523,262.0	44.1.8 (총독부13)	
폐지	1	계양공원	도시자연공원	계양구 계산동 서구 공촌동 일원	5,523,262.0	감5,523,262.0	-	44.1.8 (총독부13)	
신설	1	중심성공원	근린공원	계양구 계산동 산52-1번지 일원	-	364,196.0	364,196.0	-	
신설	2	중구봉공원	근린공원	계양구 효성동 산18번지 일원	-	125,529.0	125,529.0	-	
신설	3	새벌공원	근린공원	계양구 효성동 산74-1번지 일원	-	121,633.0	121,633.0	-	
신설	4	-	근린공원	서구 가정동 산21-1번지 일원	-	83,419.0	83,419.0	-	
신설	5	아나지공원	근린공원	계양구 효성동 산89번지 일원	-	24,684.0	24,684.0	-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계양공원	•면적변경(증239,908.0m ²) (A = 5,283,354.0m ² → A = 5,523,262.0m ²)	•기 결정된 공원면적과 공부상 면적차이로 인한 면적변경
1	계양공원	•도시자연공원 폐지 (A = 5,523,262.0m ²)	•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폐지
1	중심성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364,196.0m ²)	•기 조성된 휴양공간과 주변자연환경을 연결하여 하나의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2	중구봉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125,529.0m ²)	•공원시설 우선입지 대상지로 주변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3	새벌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121,633.0m ²)	•공원시설 입지가가능지역으로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4	-	•근린공원 신설 (A = 83,419.0m ²)	•군부대 이전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지역을 공원시설지로 선정하여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5	아나지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 = 24,684.0m ²)	•공원시설 입지가가능지역으로 생활권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

7) 연희도시자연공원

○ 총괄표

구분	기정		변경후		비고
	개소	면적	개소	면적	
계	1	1,658,886.6	1	1,052,503.0	감606,383.6
도시자연공원구역	-	-	-	-	
도시자연공원	1	1,658,886.6	-	-	
생활권 공원	소공원	-	-	-	
	어린이공원	-	-	-	
	근린공원	-	-	1	1,052,503.0
주제 공원	역사공원	-	-	-	
	문화공원	-	-	-	
	수변공원	-	-	-	
	묘지공원	-	-	-	
	체육공원	-	-	-	
	조례가정하는공원	-	-	-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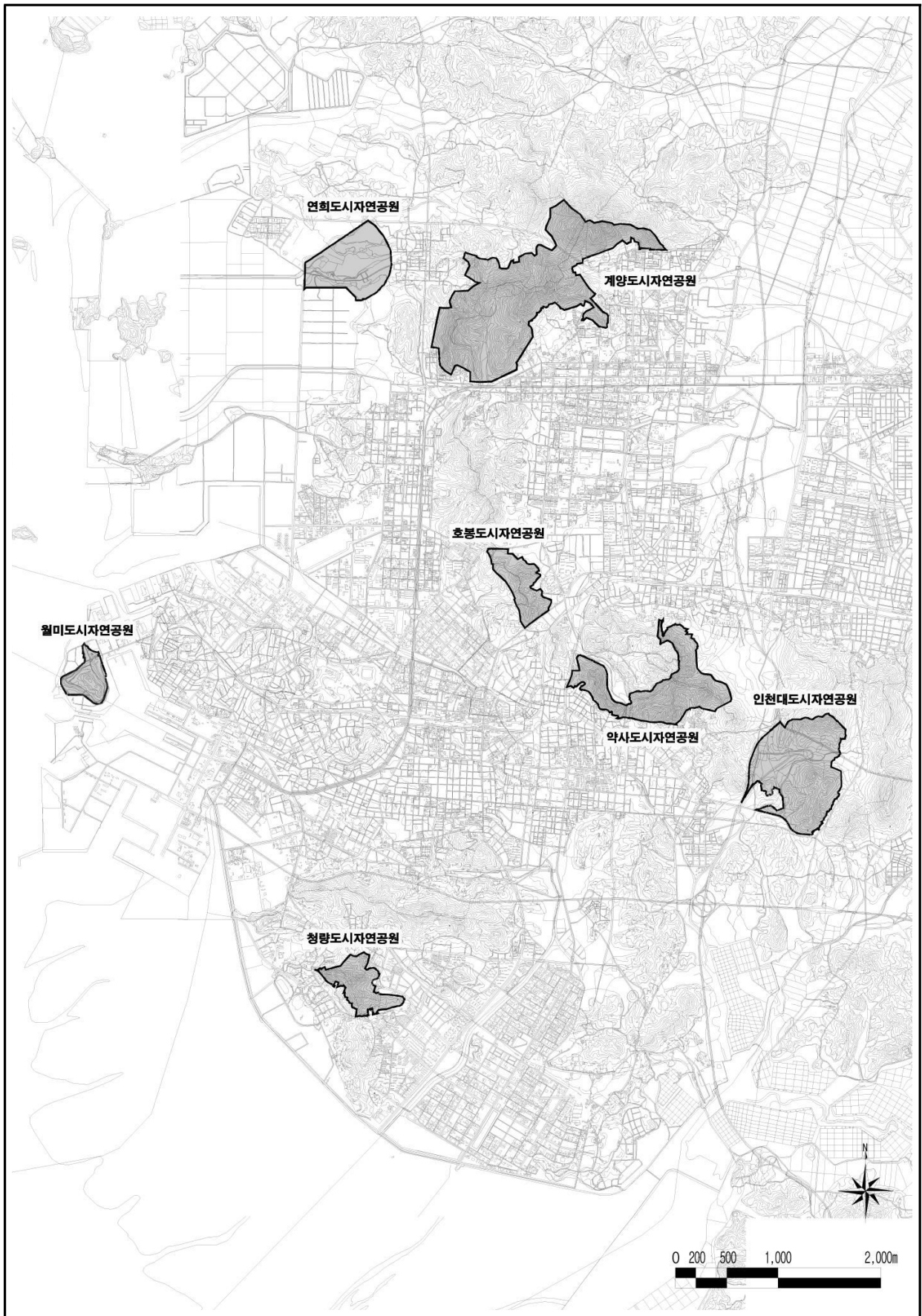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3	연희 공원	도시자연공원	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	1,658,886.6	감 4,823.6	1,654,063.0	70.7.20 (간·고344)	
폐지	13	연희 공원	도시자연공원	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	1,654,063.0	감1,654,063.0	-	70.7.20 (간·고344)	
신설	1	연희 공원	근린공원	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	-	1,052,503.0	1,052,503.0	-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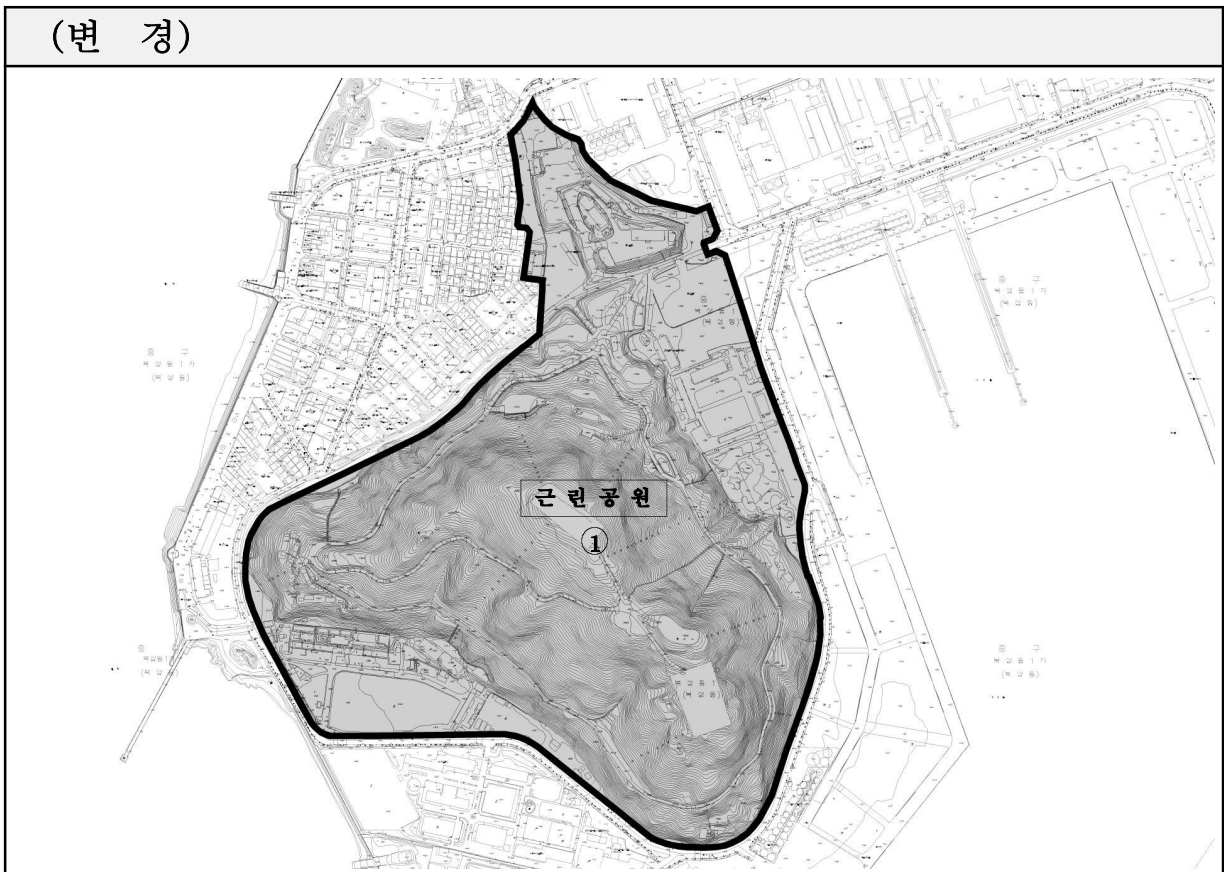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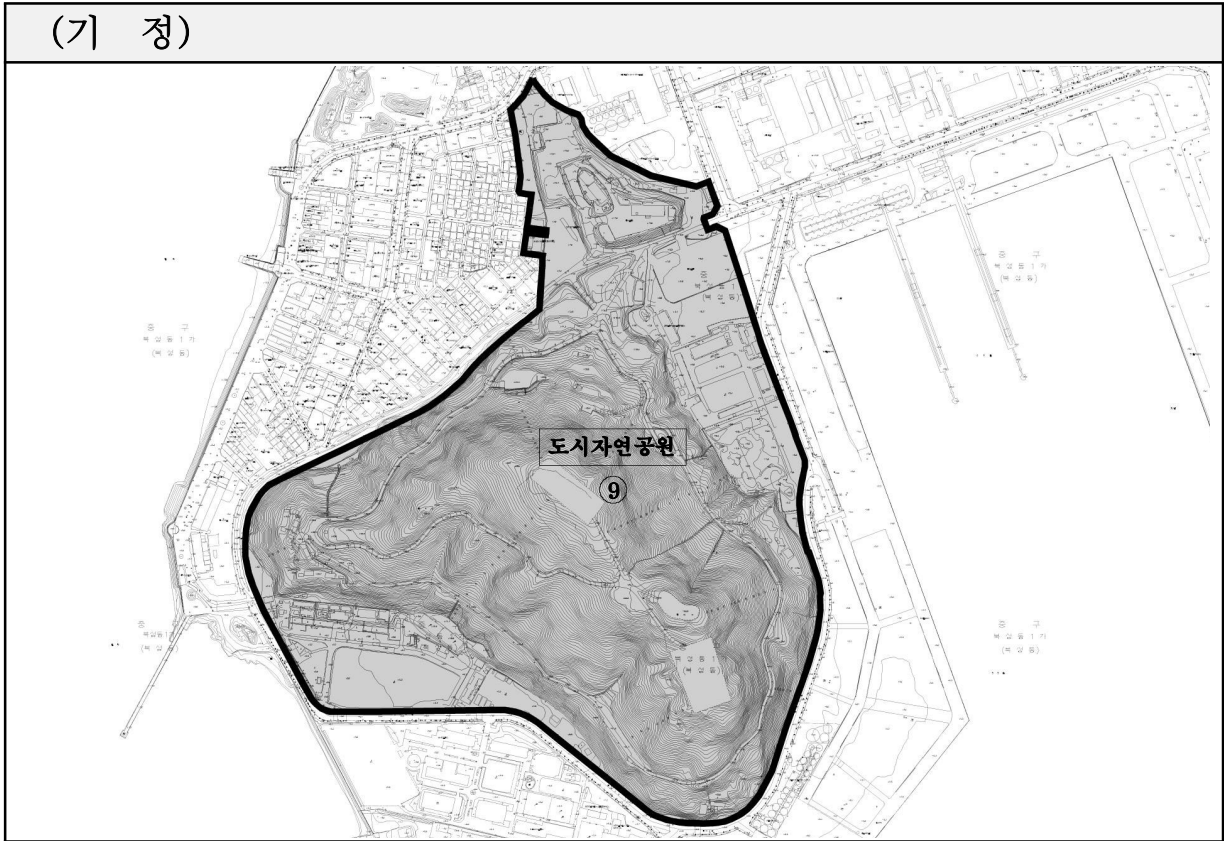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3	연희공원	•면적변경(감 4,823.6m ²) (A = 1,658,886.6m ² → A = 1,654,063.0m ²)	•기 결정된 공원면적과 공부상 면적차이로 인한 면적변경
13	연희공원	•도시자연공원 폐지 (A = 1,654,063.0m ²)	•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문개정 2005.3.31)에 의거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폐지
1	연희공원	•근린공원 신설 (A=1,052,503.0m ²)	•공원을 관통하는 도로(A=90,076m ²) 및 아시아 경기장 부지로 결정된 지역(A=511,484m ²)을 제척하고, •향후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한 경기장 설립등의 많은 변화요인이 있어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권공원(근린 공원)으로 결정

○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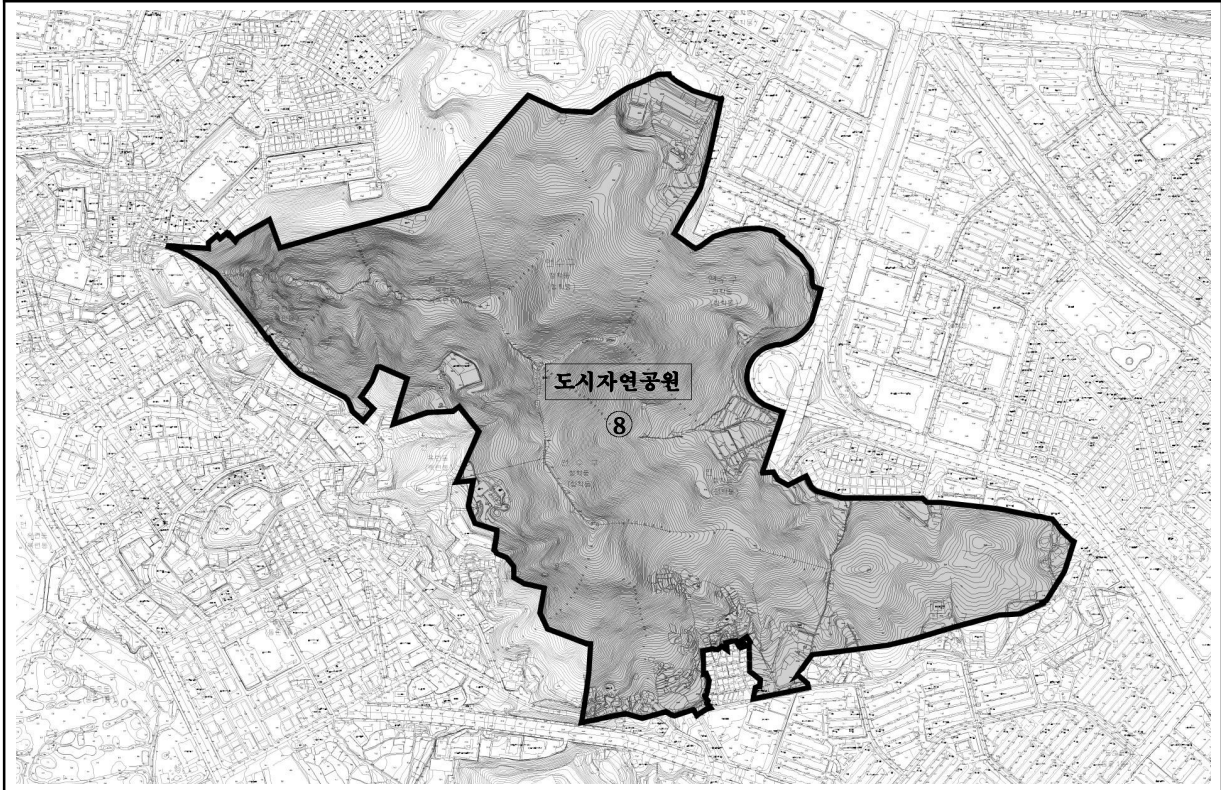
○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

1) 월미도시자연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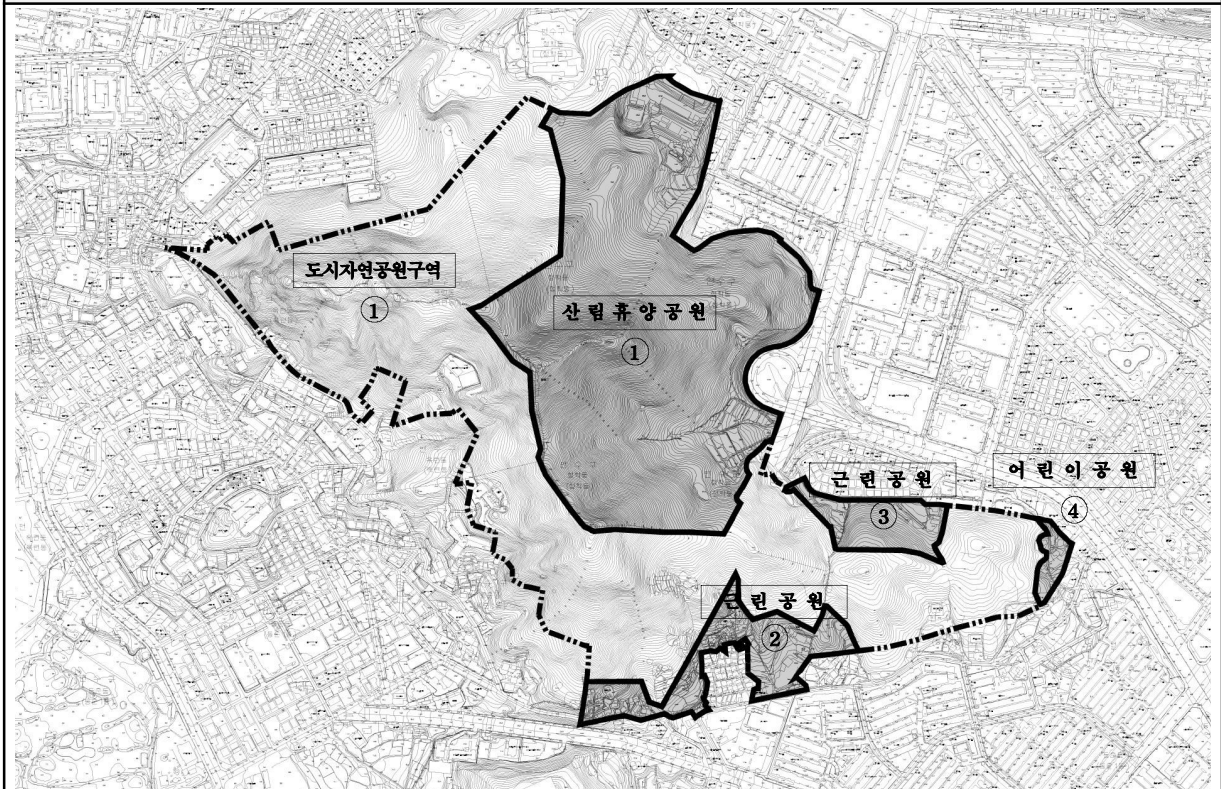


2) 청량도시자연공원

(기 정)



(변 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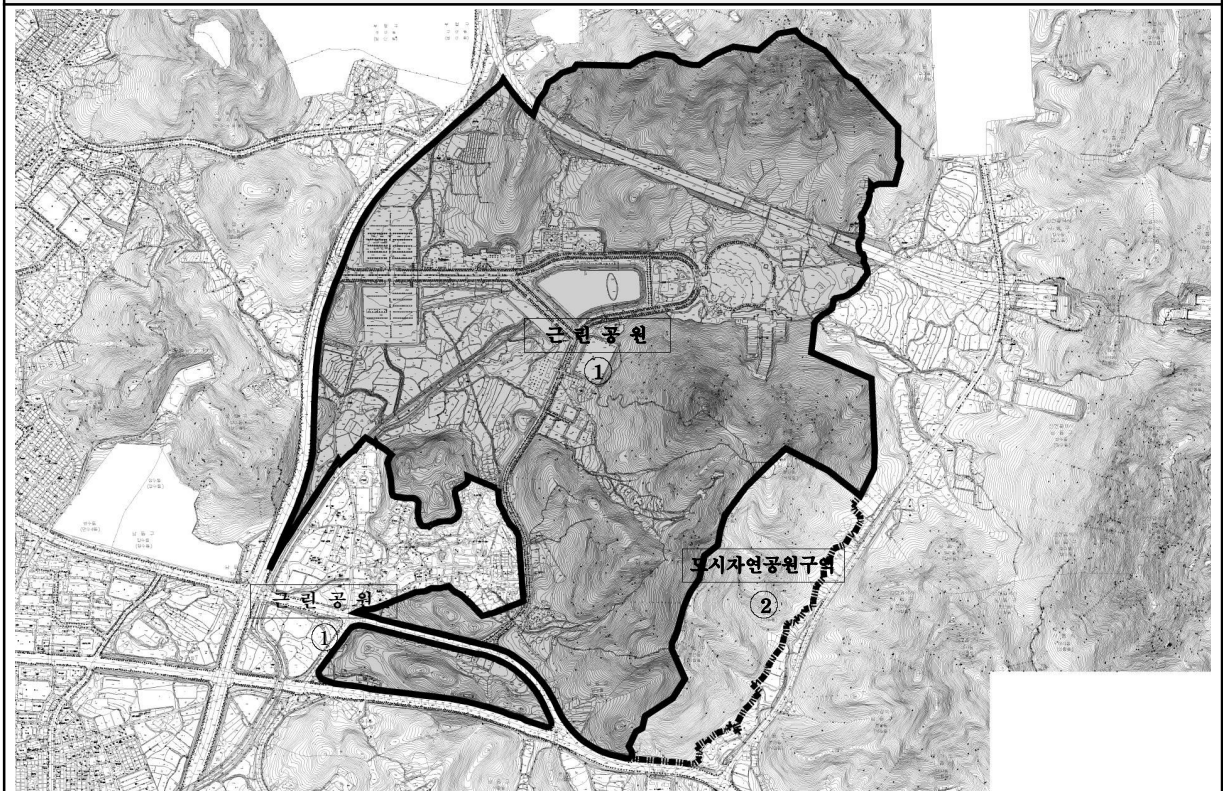


3) 인천대도시자연공원

(기 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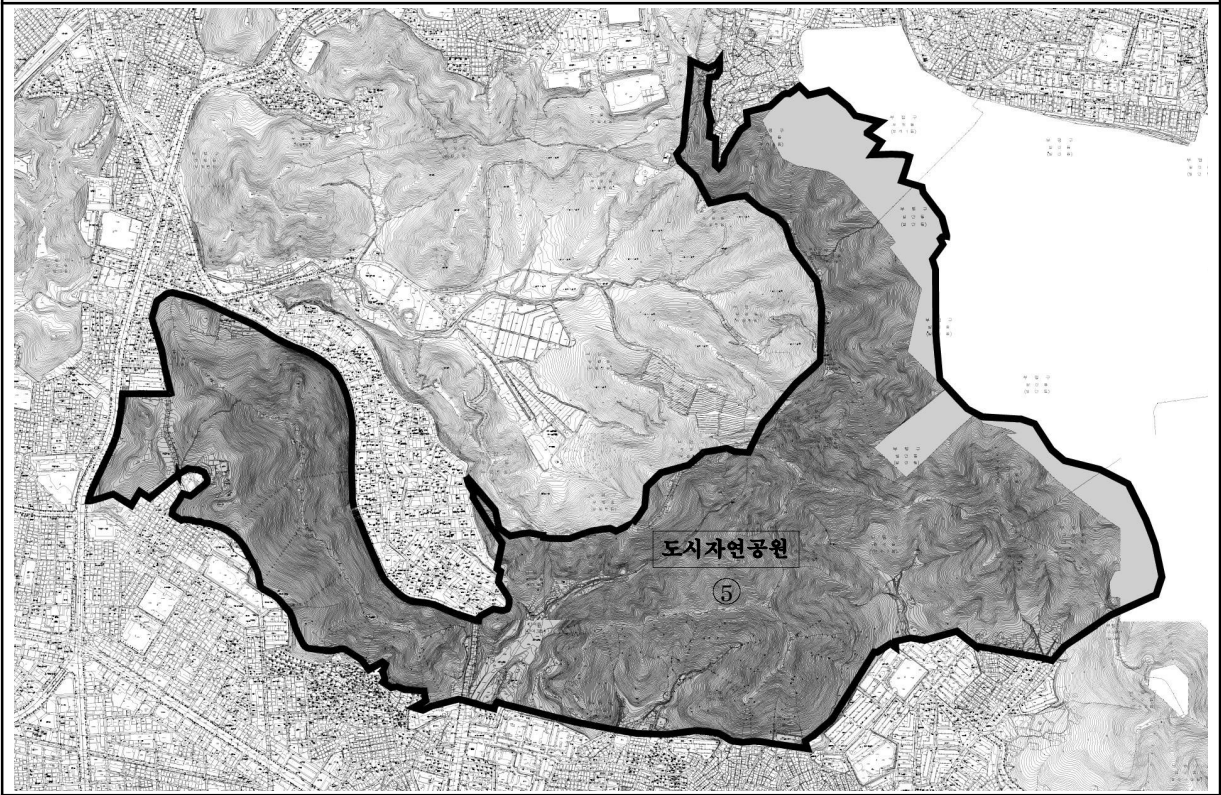


(변 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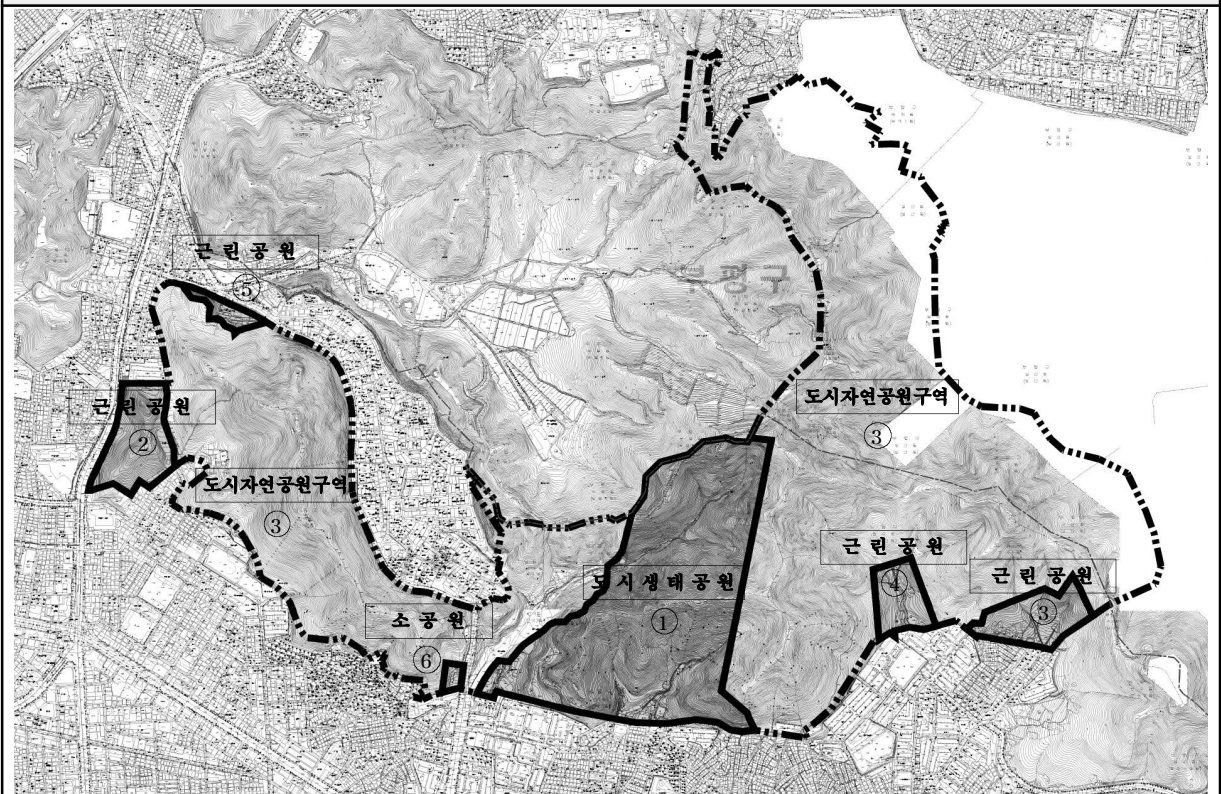


4) 역사도시자연공원

(기 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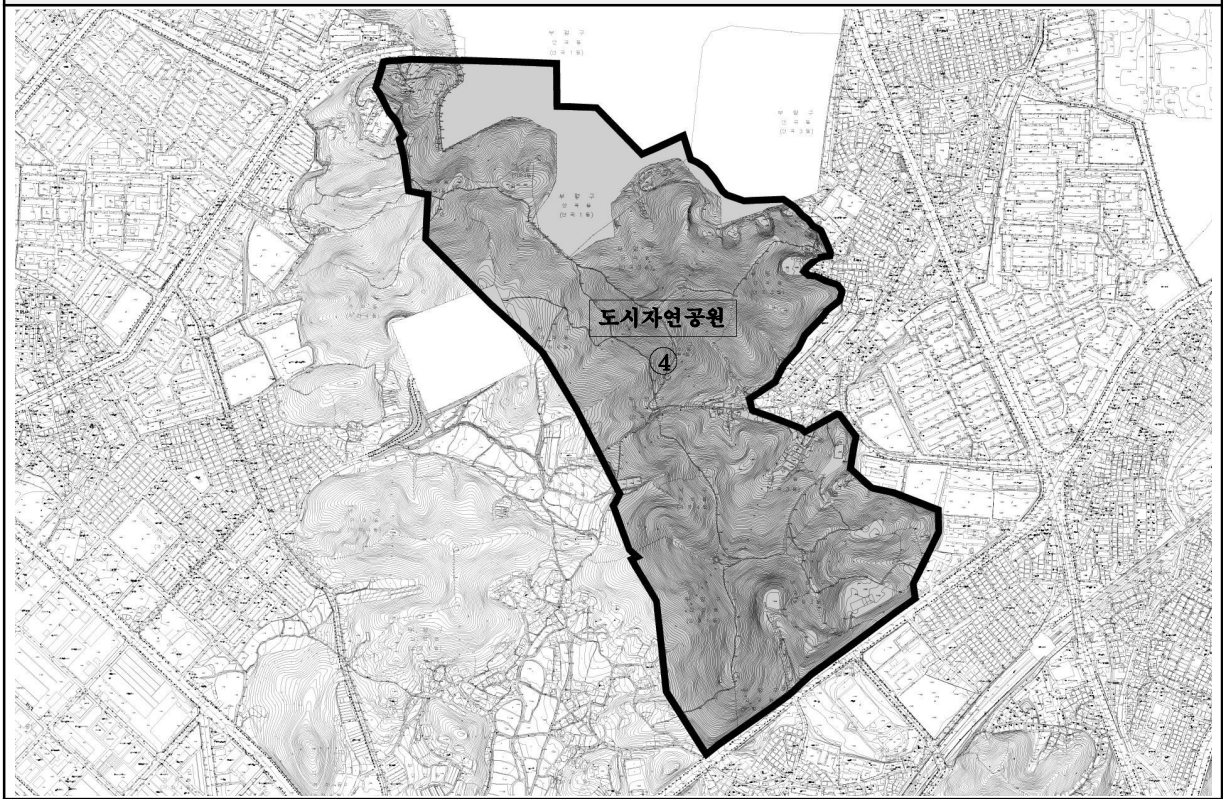


(변 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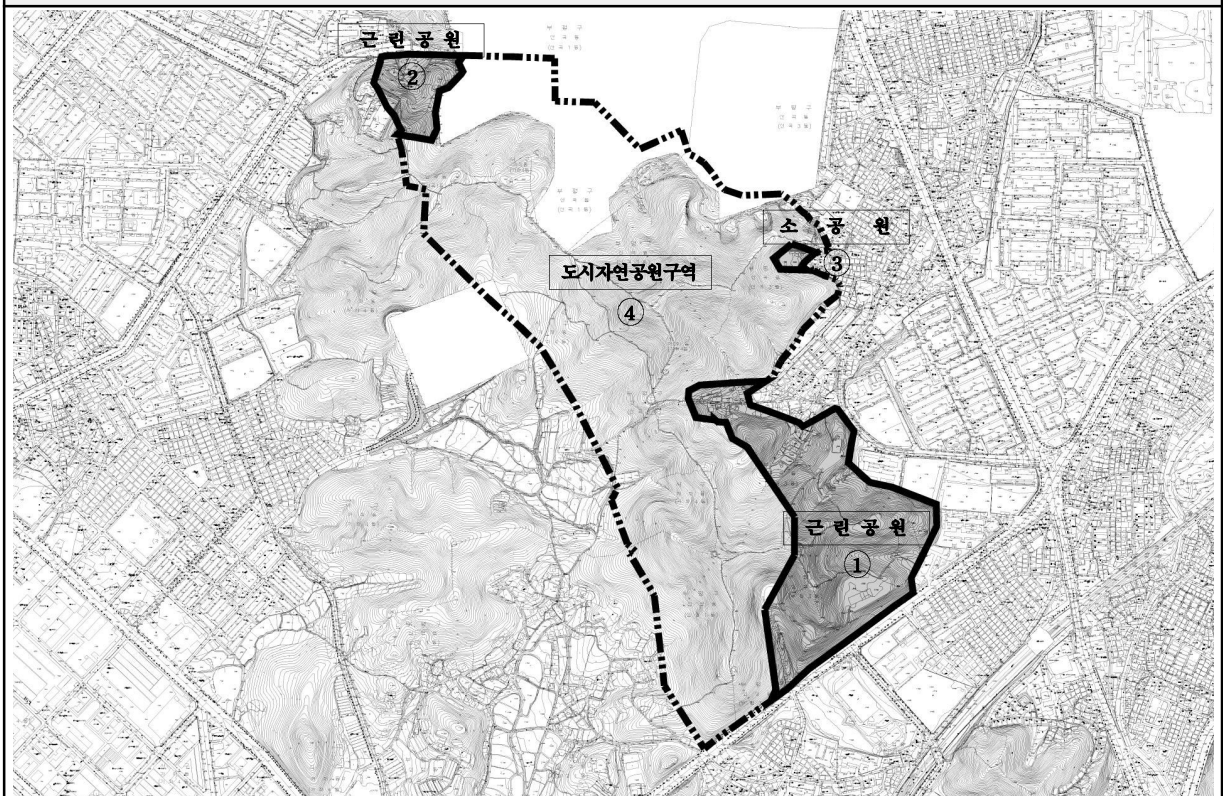


5) 호봉도시자연공원

(기 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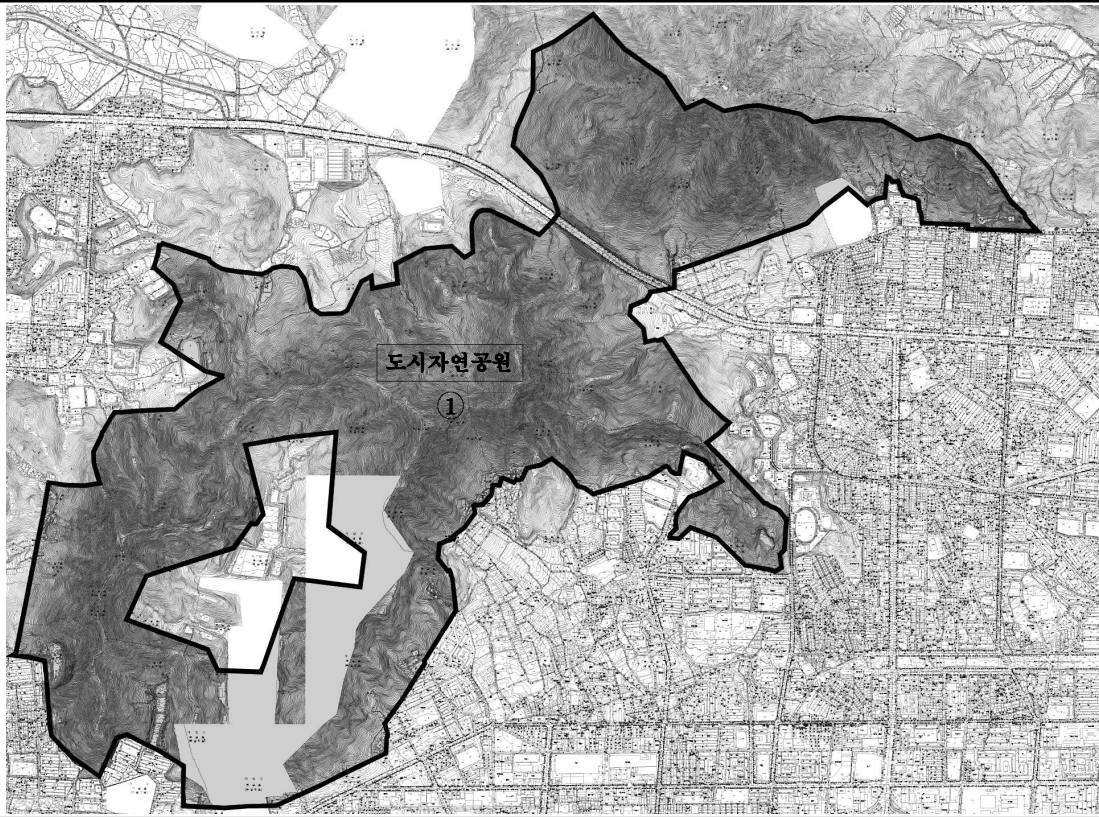


(변 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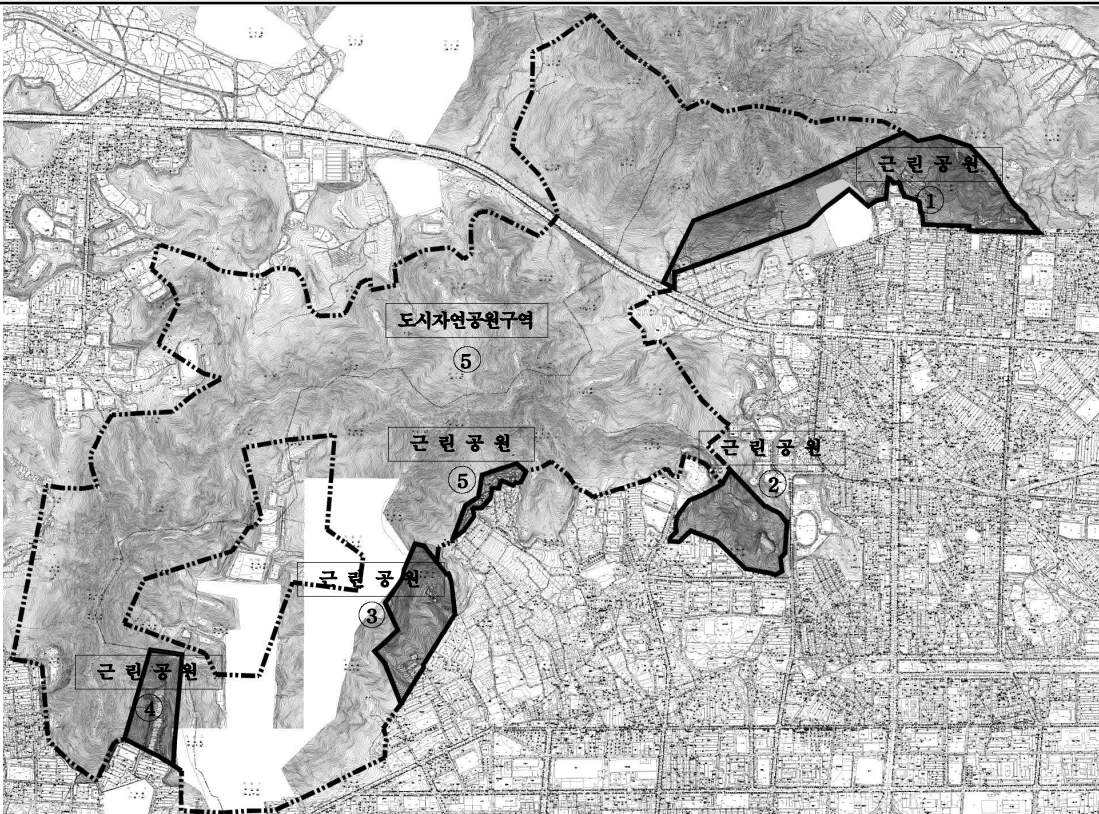


6) 계양도시자연공원

(기 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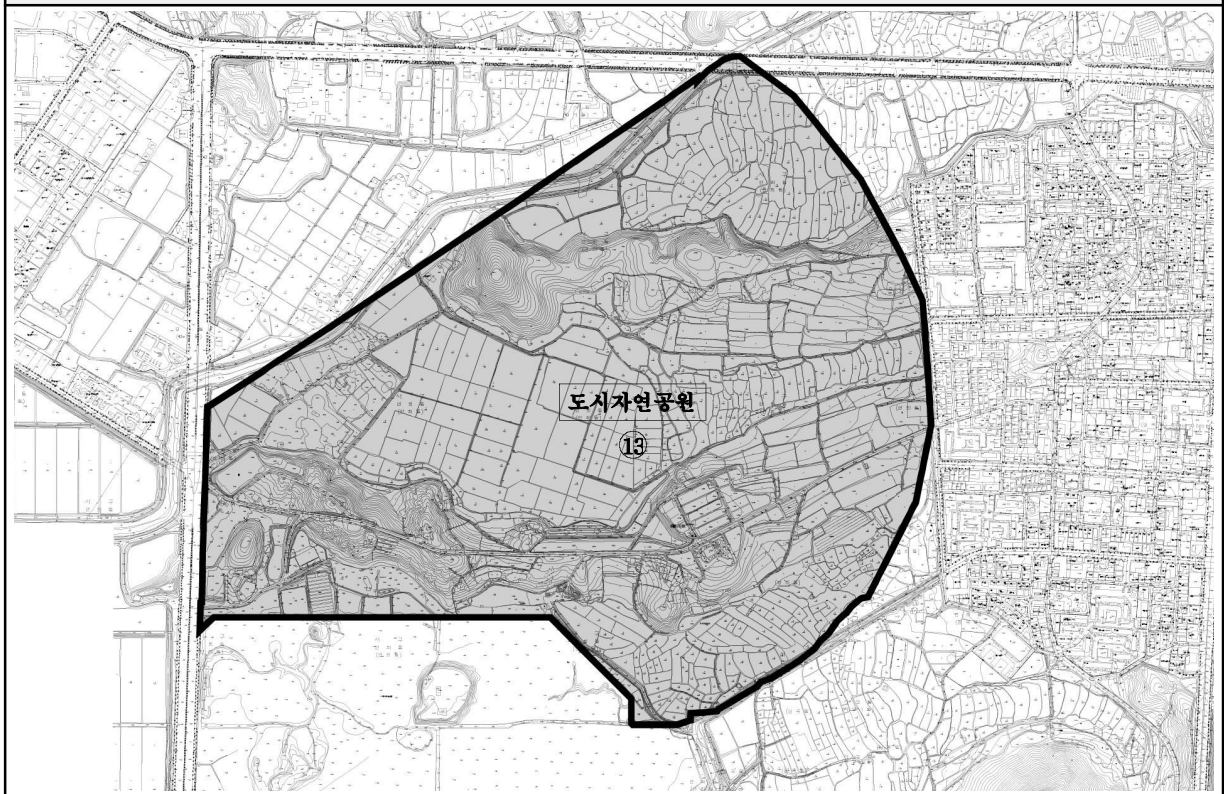


(변 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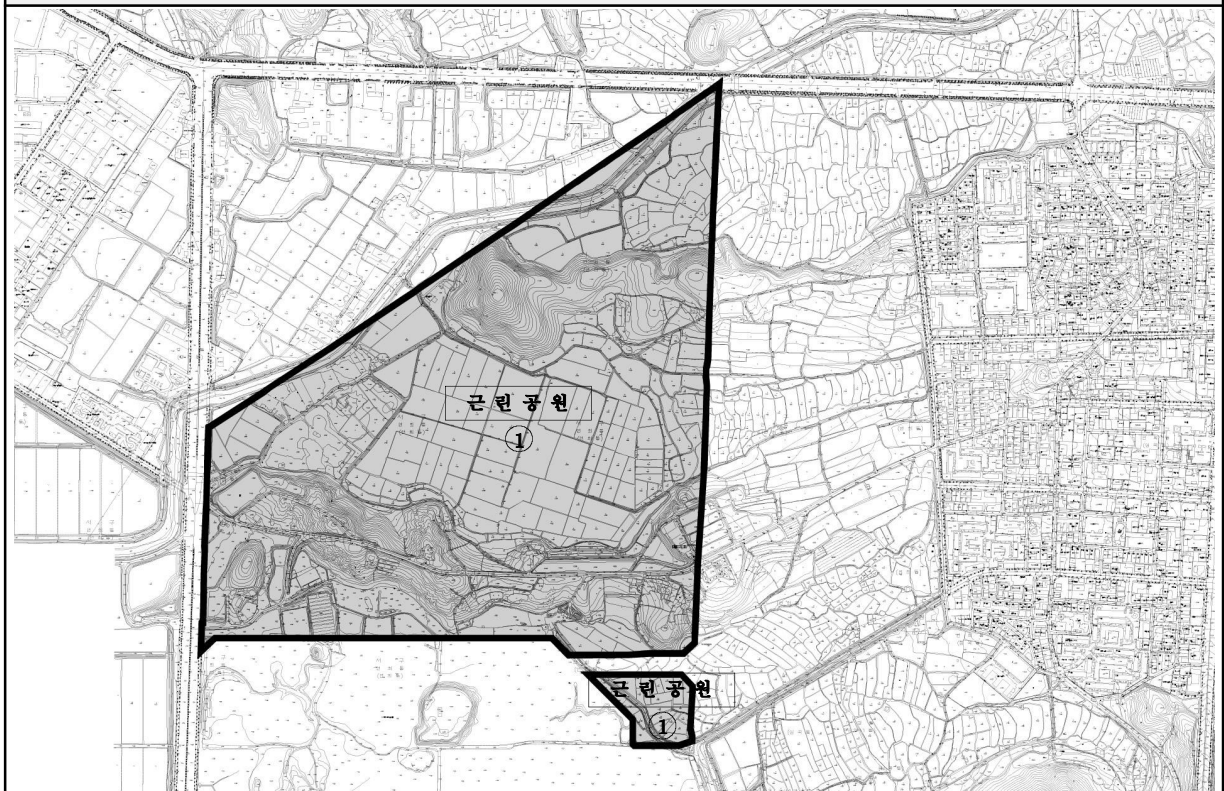


7) 연희도시자연공원

(기 정)



(변 경)



4. 입안사유

- 개정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」에서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(법률 제2조, 제26조)
- 2009. 12. 31일 까지 우리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의 성격을 다시 부여하고,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 하고자 함.(법률 부칙 제6조)

5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- 청취기간 : 2009. 8. 17 ~ 2009. 8. 30
- 청취방법 : 지방일간지 2개소, 시보, 인천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, 중구, 남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(부서) 협의결과 : 별도 첨부

6. 향후 추진계획

- 2009. 11월 :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09. 12월 : 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, 도시계획시설 : 공원)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

붙임 공람·공고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 결과 1부.

공람·공고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 의견

(공람기간 : 2009.8.17~30)

1. 도시공원위원회 자문

- 자문일시 : 2009. 4. 28
- 자문결과 : 의견사항 없음

2. 관계기관(부서) 의견

기관 (부서)명	공원명	의 견	조 치 계 획	반 영 여 부
도로과	인천대, 약사,호봉, 계양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인천대공원은 국토해양부의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지정체 완화 방안으로 검토중인 서창~장수간 도로" 우리시의 "검단~장수간 도로" 계획과 일부 저촉되며, ◦ 약사,호봉,계양,원적산공원은 "검단~장수간 도로" 계획상 진출입로설치 및 성토 등에 의한 도로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도로계획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을 수립하기 바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도로건설 계획은 초기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반영 어려움 	미만영
재난 관리과	월미,청량, 인천대,약사, 호봉,계양, 연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변경수립·지정 등의 대상규모(부지면적)가 30% 미만으로서 추후 공원조성계획 결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원조성계획 결정시 이행 	반영
서구	계양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치 : 심곡동 205-15 ◦ 축척 1/1200과 1/6000 도시계획 도면의 도시계획선 상이 지역으로 임야지번 등록전환으로 토지에 있는 도시계획선으로 정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적전산자료를 협조 받아 상이지역 재조정 하였음 	반영

※ 교통기획과, 문화재과, 도시계획과, 개발계획과, 건축계획과, 재난관리과, 토지정보과, 환경정책과, 경기장조성과, 도시철도본부, 상수도사업본부, 서부·동부공원사업소, 중구, 남구, 연수구, 남동구,부평구, 계양구 : 의견 없음

3. 주민의견

의견 제시자	공원명	의 견	조 치 계 획	반 영 여 부
(주) 대양 개발	계양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치 : 공촌동 산1-1번지일원 ◦ 면적 : 1,474,507㎡ ◦ 공원편입면적 : 39,852㎡ -공원녹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제시한 대로 660,000㎡를 근린공원에 포함하여 변경 -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여 협의매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-예산의 부족으로 여의치 못할 경우 녹지활용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상부지 일원은 접근성 및 이용성이 낮은 지역으로 공원확대 부적합 ◦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지역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협의매수가 불가 ◦ 녹지활용계약 관련 사항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후 별도 검토할 사항임 	미반영
이윤형	인천대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치 : 장수동 600-4, -10 ◦ 면적 : 1,283㎡ ◦ 근린공원 입안을 반대하며 주거지역(개발가능한 토지) 으로 풀어주기 바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로 계획된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편입 지정하여 ◦ 광역공원으로써 인천 및 주변 도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외 불가 	미반영
박화순	약사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치 : 간석동 산35 ◦ 면적 : 21,758㎡(10,435㎡소유) -소유토지를 계획중인 간석동과 만수동 연결(만수산~만월산) 다리 설치공사 구간에 편입하여 보상 등 사유재산 활용토록 협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상부지는 접근성 및 이용성이 낮은 지역으로 공원지역 포함 부적합 	미반영